

1. 회생절차 기업의 지급보증 거절시 대응 방안

상담요청

회생절차 과정중 건설업체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하는 경우, ▲지급보증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이 가능한지 ▲하도급법 위반 여부 및 제재 가능성 ▲제도적 대체수단과 개선 필요성 검토 등 대응 방안

□ 상담내용

○ 지급보증 의무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증기관의 발급 거절만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며 행정·형사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외부 사유로 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제재 수위 결정시 일부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급보증 없이 공사 진행

- 지급보증서가 없어도 하도급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체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보증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계약 이행보증 제공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현실적인 대체수단

- 현행 제도상 활용 가능한 대안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3자 직접지급 합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으로 두 방식 모두 하도급법상 지급보증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인정됩니다.

○ 결론

-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발급 거절만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보증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자 직접지급 합의 또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의 발급 거절로 지급보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구제 제도는 없어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2. 공동도급사 채권압류에 따른 지분변경 및 기성금 청구 방안

상담요청

공동도급사 중 1인의 지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발주처가 대금 지급을 유보한 상황에서, 잔존사의 지분 변경 및 기성금 청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대응 방안

□ 상담내용

○ 법적검토

- 공동도급사 중 1인이 채권압류되어 발주처에 접수된 상황에서 발주처는 지분변경을 승인할수 없습니다.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채 지분을 변경하거나 기성금을 수령할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를 우선 해소한 후 지분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권장절차 : 잔존사들이 자체 자금으로 대위 변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

- 1단계 : 잔존사와 채무자 간 공증합의서 작성(채무변제 및 지분·채권 포기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합의)
- 2단계 : 채권 변제 및 압류 해제(압류 채권을 직접 변제하고 법원의 압류 해제 절차 진행)
- 3단계 : 발주처 승인 후 지분 변경(압류 해제 확인 후 변경 계약 체결 및 지분 변경 승인)
- 4단계 : 기성금 청구(변경된 지분에 따라 기성금을 정상 청구하고, 선지출한 비용을 회수)

○ 대체방안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선금 상계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

- 시스템 적용 가능 여부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결론

- 채권압류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지분 변경이나 기성금 수령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큼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채권을 우선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한 후 지분 변경을 완료하고 기성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대응방안으로 판단됩니다.

3. 총액계약(일괄도급)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 방식

상담요청

총액계약(Lump Sum) 공사에서 설계변경(DCN/FCN)으로 공사 물량이 증가된 경우, ▲계약상 증액만 가능하고 감액은 불가능한지 ▲원도급사가 감액정산을 요구하거나 기성금을 보류·공제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 및 법적 기준에 대한 검토요청

□ 상담내용

○ 특기사항서 해석

- 계약서의 '누락분은 정산하지 않되, 도면에 없거나 새로운 아이템은 협의하여 정산한다'는 조항만으로 감액 정산을 전면 배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실제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 전체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총액계약과 감액 정산

- 총액계약이라도 설계변경으로 실제 공사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가능하려면 실질적인 설계변경과 실제 미시공 공사량 감소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기성금 지급

- 이미 완료되어 기성이 확정된 공사대금을 감액 정산을 이유로 전액 보류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변경 부분은 협의를 끝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감액 공제 시 유의사항

- 원도급사가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산정하여 공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설계변경 자료(DCN·FCN), 도면, 계약서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결론

- 총액계약이라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감소한 경우 감액 정산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 설계변경의 실질, 실제 공사량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기성이 확정된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